

<주주각위>

##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18년 3 월 22 일(목요일) 오전 10시 00분
2. 장 소 :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41 충북테크노파크 1층 한방천연물센터 대강당
3. 회의목적사항
  - 가. 보고사항
    - :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
  - 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19기(2017.1.1.~2017.12.31.)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(결손금)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  
- 정관 변경(안)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<b>제5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</b>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<b>20,000,000주</b>로 한다.</p>	<p><b>제5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</b>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<b>100,000,000주</b>로 한다.</p>	총발행 가능 주식수 변경
<p><b>제8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</b>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<b>우선주식</b>으로 한다.</p>	<p><b>제8조(주식 및 주권의 종류)</b>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<b>종류주식으로 하며,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,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</b></p>	불명확한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 수정
<p>제8조의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①이 회사가 발행할 <b>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, 그 발행 주식의 수는 5,000,000주로 한다.</b></p>	<p>제8조의2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 ①회사는 <b>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으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(이하 "우선주식")을 발행할 수 있으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25,000,000주로 한다.</b></p>	불명확한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 수정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<u>제8조의5(상환전환우선주식)</u> 회사는 위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<u>제8조의5(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)</u> ①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무의결권 주식(이하 “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”)을 발행할 수 있다.  ②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 8조의 2 제2항 내지 제 6항을 준용한다.</p>	<p>불명확한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 수정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8조의6(상환전환우선주식)</u> 회사는 위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불명확한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 수정</p>
<p>제16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1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1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1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제16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30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30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30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사채의 액면총액의 변경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17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          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1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1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1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제17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          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30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30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300,000,000,000 원</b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사채의 액면총액의 변경</p>
<p>제51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           ①대표이사는 <b>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</b>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<b>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⑤대표이사는 <b>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⑥대표이사는 <b>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b></p>	<p>제51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           ①대표이사는 <b>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,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b></p> <p>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</p> <p>2.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</p> <p>⑤대표이사는 <b>제1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⑥ &lt;삭제&gt;</p>	<p>이익배당 내용 수정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54조(이익배당)</p> <p><u>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	<p>제54조(이익배당)</p> <p><u>②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써 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<u>다만,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u></p>	이익배당 내용 수정
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3-1호 의안 : 기타비상무이사 김명환 선임의 건

제3-2호 의안 : 기타비상무이사 강종구 선임의 건

제3-3호 의안 : 사외이사 고상곤 선임의 건

구분	성명	생년월일	추천인	약 력	최대주주와의 관계	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
기타 비상무 이사	김명환	57.01.30	이사회	대한취담도학회 회장 역임 (2010~2012)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(2011~2013)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(1999~현재) 세계췌장학회 자문위원 (2014~현재) 아시아 대양주 췌장학회 회장(2018~현재) ㈜엔지캠생명과학 CMO(2015~현재)	없음	없음
기타 비상무 이사	강종구	55.12.14	이사회	한국실험동물학회 회장 (2011~2012) 충북대학교 수의대 교수 (1990 ~ 현재) 바이오톡스텍 대표이사 (2000 ~ 현재) 한국실험동물학회 수석이사 (2012 ~ 현재) ㈜엔지캠생명과학 기타비상무이사 (2015 ~ 현재)	없음	없음
사외이사	고상곤	53.11.23	이사회	㈜대우증권 사외이사(現미래에셋대우)(2009~2011) 한국인삼공사 마케팅·홍보 자문위원장(2014~2016)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(2013~현재) ㈜엔지캠생명과학 사외이사 (2015~현재)	없음	없음

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제4-1호 의안 : 비상근감사 강황배 선임의 건

구분	성명	생년월일	추천인	약 력	최대주주와의 관계	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
감사	강황배	66.08.15	이사회	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(학사) ㈜SK증권 (1993~1998) 온누리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(2009~현재) (주)엔지캠생명과학 감사 (2015~현재)	없음	없음

제5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
성 명	직 위	교부할 주식	
		주식의 종류	주식수
윤도경	이사	보통주	3,000

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

제7호 의안 : 감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

#### 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,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.

#### 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, 인감날인),  
대리인의 신분증

#### 6.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공고사항의 비치
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공고사항을 우리 회사 본점, (명의개서대리인 기입)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7. 기타사항 : 우리회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18년 3월 7일

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 
대표이사 손 기 영 (직인생략)